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외교부장관 소관에 ‘국제정세 배포’에 관한
사무를 추가〉

■ 김건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869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건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5. 04. 16.
3. 회부연월일 : 2025. 04.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여왔음.

그러나 외교부 공무원들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외국의 관계기관과 자료를 교환하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외교부장관의 사무 관장에 ‘자료의 배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외국의 관계기관과의 자료 교환 등 업무가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외교부 소관 사무에 “국제정서의 배포”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및 제42조).

현행	개정안
제30조(외교부)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국제정세의 <u>조사·분석</u> 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0조(외교부) ① ----- ----- ----- ----- ----- ----- <u>조사·분석·배포</u>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정부조직법」 제30조 및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¹⁾에 따라 외교부는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재외공관별로 주재국의 정치·경제·사회 등 동향을 파악하고 외교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 국제안보 및 북핵 등 정보 등을 조사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듯이 외교부가 외국 관계

1)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 외교부는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다자·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국제관계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 문화협력, 대외홍보, 재외국민 보호·지원, 국제정세의 조사·분석 및 이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기관과 자료 교환의 경우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외교부가 수행하는 업무 범위 중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배포’라는 용어를 추가함으로써 현재 외교부가 외국 관련 기관과 자료를 교환하는 업무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개정안은 국가행정기관의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²⁾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현행법은 국민을 위하여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기본법이라는 점에서, 개별 행정부처의 구체적 업무 사항을 현행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더하여 외국과 업무 관련 자료를 교환하는 국가행정기관에는 통상교섭 사무를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³⁾, 관세·국제금융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⁴⁾ 등도 있는바, 외교부에 대해

2) 「정부조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정부조직법」 제38조(산업통상자원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4) 「정부조직법」 제27조(기획재정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

서만 규정하는 것이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의 조문은 “국제정세의 조사·분석·배포”로 표현하고 있어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무관하고 연계성이 미흡해 보임.

“국제정세”라는 용어는 국제법상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적 동향과 종합적인 분위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표현할 경우 실제 외교부가 외국의 관련 기관과 교환하는 자료의 범위보다 좁게 해석될 수 있고, 무엇을 배포하는지, 배포의 대상이 누구인지 등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는 등 법 집행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보임.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이 법은 국가행정기관의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외무공무원의 업무 수행 관련 법률⁵⁾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5) 「외무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외무공무원의 직무 및 책임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 의 처
02)6788-5339